

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문병호의원 소개)

□ 제안이유

-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를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로 개편하고자 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국민들의 기금운용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려고 함

□ 주요내용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를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안 제2조, 제26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조직은 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사무국으로 두고 그 외 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기금 전반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운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함(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운용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음(안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검토의견

○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공사를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상설 조직으로 구성 : 수용론

- 국민연금기금은 장래에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이므로 연금급여를 지불해야 할 최종책임이 있는 정부(복지부)가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를 구성할 경우 기금운용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됨
 - ※ 국민에 대한 연금기금운용의 최종책임은 연금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연금기금운용과 연금정책은 분리할 수 없음
-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의 경우도 연금급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행정각부의 장관(예 : 미국 재무부, 일본 후생노동성 등)에게서 연금기금 운용만 독립시킨 사례는 거의 없음
-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공사는 별도 독립기구로의 개편보다는 보건복지부산하에 두어 복지부의 연금전반에 관한 정책수행능력을 개선·보완함이 바람직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 확대 : 정부안 유지

- 그간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 누차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금융·복지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수 축소는 불가피함
- 위원수가 많은 경우 대표성 확보는 용이하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므로 정부안대로 9명 유지
- 위원회 상설화의 취지가 전문성 확보에 있으며, 가입자단체 등의 추천전문가 4명을 참여시켜 대표성 보완

○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 : 정부안 유지

- 기금운용위원 추천 권한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기금운용위원회의의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신설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된 사항으로
-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실익이 적고, 단체 추천인을 바로 임명하기보다는 일정배수 추천인중 정책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 유리

○ 국민연금정책협의회

-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연금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수시로 필요한 정책협의를 정례화
 - * 총리실에서는 사실상 4대 공적연금전반에 관한 정책협의회로 운영할 계획
- 협의회는 법적인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며 연금의 기본정책, 타연금과의 연계방안 등을 협의하는 정부내 정책조율과정의 일부
- 입법예고안에는 가입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를 통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의 위원 추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 협의회가 동 기능을 담당하도록 수정됨
- 적립금이 2010년에 329조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므로 정부는 국가 경제정책 전반을 감안한 자산의 효율적 배분,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임

○ 위원회 산하조직 확대 : 정부안 유지

-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기능면에서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사무국을 포함 4개의 국을 두는 것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측면, 위원회의 기능의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함
 - * 국가인권위원회(5국 1과)의 경우 180명이 근무중
 - * 정부안의 경우 위원회 정원 30명내외 정도로 구상하고 있음

- 상임위원(정무직)이 각 국의 국장을 겸임하는 체계는 정부조직구성원리상 적합지 않으며, 각국과 국별 업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례도 없음

○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전반을 수립 : 정부안 유지

- 법 제83조제1항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복지부장관이며, 기금운용계획에는 여유자금운용계획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복지사업 및 공단관리운용비도 포함되므로 기금운용계획전반을 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권한과 충돌
-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정(예산처장관협의→국무회의심의→대통령 승인→국회제출), 기금결산 등을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규정은 기금관리기본법과 배치
- 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전반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기금관리법상의 기금관리운용주체인 복지부장관이 민간전문가인 위원장과 최소한 공동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하나, 전문성 원칙과의 상충 및 행정경비 소요 등의 추가검토 필요

○ 무자본 특수법인의 운영공사 설립

-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별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 국민연금기금은 장래에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이므로 연금급여를 지불해야 할 최종책임이 있는 정부가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공사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